

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0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조례의 적용대상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, 제4조)
- 다. 근로자 지원사업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라. 근로복지시설 설치·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, 제8조)
- 마.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근로복지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근로복지기본법」 및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구미시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근로자”란 「근로복지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근로자와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.

2. “사용자”란 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소재한 사업체에 종사하면서 시에 주소를 둔 근로자로 한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,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(사업 및 예산지원)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
2.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·홍보, 고충처리, 상담활동 지원 사업
3.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지원 사업
4. 국내 및 국제사회의 선진적 노동현장 및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
5. 경영단체와 노동단체 간의 협력관계 유지 및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 등의 지원 사업
6. 근로자의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
7.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,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,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“근로복지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

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(사업주단체 포함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 포함)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사무의 종류, 범위,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9조(포상)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, 단체에 대하여 「구미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근로자"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"사용자"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,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.

제3호~제5호 생략

제4조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·기금·세제·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8조(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(이하 "근로복지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.

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(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·노동조합(지부·분회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공단 또는

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·사업주·노동조합·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및 근로복지시설
설치·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에 따른 비용의 소요가 예상됨
(안 제6조~안 제9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
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
수립되지 않아 비용의 구체적인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노동복지과 지방행정주사보 이수빈 (480-6202)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김 영 철
	담 당	김 팔 근
	담 당 자	이 수 빈 (480-6202)